

[붙임]

【 민원조사 결과보고 】

기술유출 확인 및

기술료 지급대상 제외 요청

- ‘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 ○○’ 관련 -

2014. 4. 14.

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부

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
www.etri.re.kr

1. 민원개요

- 접수경위 : 감사인 이메일('14.3.10.)
- 민원건명 : 기술유출 확인 및 기술료 지급대상 제외 요청
- 민 원 인 : ○○○○ /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
- 민원내용

- 민원인은 연구원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에 참여하여, 최근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로부터 기술료를 받게 되었으며, 민원인은 □□□□에 발주한 용역을 통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을 확보하였음.
- 한편, 최근 △△△ □□□□□이 용역업체 □□□□에 ○○○○ ○○○○ 관련으로 연구원의 기술규격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기술료 지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.
- * △△△ 책임연구원은 현재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에 근무 중임.
- △△△ □□□□□이 □□□□에 연구원 기술규격을 제공한 것은 기술유출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이므로 기술료 지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.
- 상기 사항이 사실인 경우 △△△ □□□□□을 징계하고 기술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.

2. 쟁점사항 및 피민원인 · 참고인 등 답변내용

<p>《쟁점사항》</p> <p>△△△ □□□□□이 용역업체 □□□□에 기술규격 등의 ETRI 내부자료를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, 사실인 경우 기술유출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</p>

《피민원인 · 참고인 등 답변내용》	
<p>피민원인 : △△△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</p>	<p>□□□□에 ETRI 내부자료를 <u>제공한 사실이 없음.</u> ※ 면담 및 질문 · 답변서</p>
<p>참고인 : ○○○○ 前 : □□□□ 이사 現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 이사</p>	<p>□□□□ 근무 당시 ETRI로부터 <u>ETRI 내부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.</u> ※ 면담 및 질문 · 답변서</p>
<p>참고인 : ○○○○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</p>	<p>□□□□과 ETRI의 관계나 <u>자료 제공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함.</u> ※ 이메일 답변</p>
<p>참고인 : ○○○○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</p>	<p>ETRI 기술규격을 <u>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음.</u> ※ 이메일 답변</p>
<p>참고인 : ○○○○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</p>	<p>TM/TDP 문서를 관리하는 PMS 시스템의 경우 열람자 이력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누가 언제 왜 열람을 했는지 <u>확인할 방법이 없음.</u> ※ 면담</p>

3. 민원조사 결과

- ◇ 피민원인, 참고인의 답변 등을 확인한 결과 피민원인이 용역업체 □□□□에 ETRI 기술규격 등의 내부자료를 제공하고 ETRI 내부 기술을 유출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.
- ◇ 다만, 이해관계인의 기술 기여 여부 확인 및 기술료 배분 등의 분쟁시 개최·운영되는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‘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’ 을 개정하여 ‘이해관계인 위원 기피 신청 제도’ 를 도입·제도 운영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함.
- ◇ 또한, ‘연구원 전자연구노트 제도 등’ 운영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TM·TDP 문서 관리 시스템 고도화시 문서 출력자, Soft copy 저장자 등이 그 사유를 밝히고 출력·저장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함.

4. 기타 민원처리 경과

- 3. 10.(월) : 민원접수(이메일 도착) ※ 3.7.(금) 면담 시행
- 3. 11.(화) : 내부보고
- 3. 12.(수) ~ 19.(수) : △△△ □□ 면담 및 질문·답변서 징구
- 3. 20.(목) ~ 21.(금) : △△△ □□ 질문·답변서 재징구
- 3. 25.(화) ~ 4.2.(수) : ○○○ □□ 면담 및 질문·답변서 징구
- 4. 7.(월) ~ 8.(화) :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이메일
질문·답변서 징구
- 4. 8.(화) : □□□□ ○○○ □□ 이메일 질문·답변서 징구
- 4. 9.(수) ~ 10.(목) : □□□□□□ ○○○ □□ 면담

첨부1

민원조사 세부결과

《 쟁점사항 》

△△△ □□□□□이 용역업체 □□□□에 기술규격 등의 ETRI 내부자료를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, 사실인 경우 기술유출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

《세부결과》

- ◇ 피민원인, 참고인의 답변 등을 확인한 결과 피민원인이 용역업체 □□□□에 ETRI 기술규격 등의 내부자료를 제공하고 ETRI 내부 기술을 유출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.
-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『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내지 제26조, 연구원 연구문서관리요령, 보안관리규정 및 이하 제요령』 등에 따라 그 결과물 등에 관한 관리·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.
- 또한, 연구원 윤리경영 실천규정에 따라 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 및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기술개발기여자 등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본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부서의 자료 등을 살펴보면, 연구원과 ○○○○○○○○間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등 침해로 인한 기술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절차(사건번호 : ○

○○○○○○○○○ 손해배상)로 발생한 합의금 8억원이 민원인 ○○○과 용역업체 □□□□이 2011년 2차례 수행한 용역결과물의 주요 영향으로 발생되었는데 그 용역결과물이 만들어 질 때 피민원인 △△△와 참고인 ○○○이 사전연구 등의 기여 부분 인정을 요구하고 합의금 배분을 뒤늦게 요청하면서 민원인 ○○○間 쟁점화가 되었고, 이 과정에서 민원인 ○○○이 참고인 ○○○으로부터 □□□□에서 용역을 수행할 당시 연구원의 기술 규격 등의 내부자료를 피민원인 △△△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음.

- 감사부는 본 민원 관련으로 다양하고 많은 자료와 법규정을 검토·분석하고 피민원인 △△△가 ETRI 내부 기술 규격 등의 자료를 □□□□에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민원인 및 참고인들과 면담 등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단서 확보를 시도·추진하였으나 십수년전 발생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음.
- 이에 감사부는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지급될 합의금의 대가 지급절차가 지연될 우려 감안을 포함하여 기술 유출에 대한 입증 불가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. 한편, 피민원인 △△△와 참고인 ○○○이 수행한 사전연구 등과 □□□□에서 제공한 용역결과물 등의 연관성 여부와 그 기여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가는 감사사항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검토치 않음.

○ 다만, 감사부는 이번 민원을 통하여 결과물 기여와 기술료 수입 배분시 연구원 직원과 용역업체 등 관계자間 결탁이 있는 경우 선의의 원기술개발기여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원 내부 부패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는 바, 이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서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요구함.

- 원기술개발기여자 등 이해관계인의 기술 기여 여부 확인 및 기술료 배분 등의 분쟁시 개최·운영되는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‘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’ 을 개정하여 ‘이해관계인 위원 기피 신청 제도 등’ 을 도입·제도 운영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기술이전부서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함.
- 또한, ‘연구원 전자연구노트 제도 등’ 운영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TM·TDP 문서 관리 시스템 고도화시 문서출력자, Soft copy 저장자 등이 그 사유를 밝히고 출력·저장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정보화혁신부서에서는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함.